

I.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동의불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권리·보존·처분

처분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예금 등의 관리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정기적 지출(임료, 연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라.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

마.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바.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사. 보증행위

2. 기타

가. 소송행위 등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3. 법원의 허가사항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II.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처분

구입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신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전속·중속·수탈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 나.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다.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연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 라.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휴대폰·신용카드 개설 등)의 체결·변경·종료
- 마.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 바.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 사.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포함)를 통한 재산내역 등 정보 확인
- 2. 신상보호
 - 가.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나.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다.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 3. 기타
 - 가.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 4. 법원의 허가사항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Ⅲ.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진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